

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

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(목련데이케어센터 포함)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5. 10. 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규 모	시설내역
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	강남구 개포로 617-8 (개포동)	대지 : 1,087㎡ 건평 : 2,693㎡ (지하1층/지상4층)	-1층 : 목련데이케어센터/해마을주간보호센터 -2층 : 구립목련어린이집 -3층 : 목련노인교실 -4층 : 건강가정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-지층 : 주차장

2. 위탁기간 : 2016. 1. 1. ~ 2020. 12. 31.(5년)

3. 위탁기간 : 2016. 1. 1. ~ 2020. 12. 31.(5년)

4. 신청서 접수 및 방법

- 공고기간 : 2015. 10. 01.(목) ~ 10. 15.(목)
- 접수기간 : 2015. 10. 08.(수) ~ 10. 15.(목) 09:00 ~ 18:00 (8일간)
- 접수장소 : 강남구청 보육지원과(본관 2층)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(접수후 변경 불가)

※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 법인·학교에 있음

5. 신청자격

-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등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6. 신청제의 대상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 제3항 및 동법 제3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최근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
- 법인(학교)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(학교)
-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(학교)
- 공고일 현재 타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 중인 법인 (학교)

7. 위탁조건

- 법인이나 학교의 경우는 정관에 가정(사회)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
 -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“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약정서”로 별도 약정 체결함
 -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수 있도록 할 것
 - 시설장 등의 임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에 의함
 -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의함
- ※ “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위·수탁 협약서” 별도 약정 체결함(노인복지과)

구 분	서류항목	운 영 체	
		법인	학교
개 별 사 항	·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, 법인인감증명서	○	
	· 등록증, 학교의 회칙 또는 규약		○
	·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
공 통 사 항 (별첨2)	· 위탁신청서(원본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 5년 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계획서 (예산·수입·지출계획서 첨부) -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- 전입금부담 및 고용승계 승낙서 · 목련데이케어센터 위탁운영 신청서(사업계획서는 별도 작성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탁운영체 현황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표자의 경력사항 - 법인의 가족사업 관련 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-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·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학교(학교명의 재산) ·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[별도 작성 제출] ※ 모든 서류(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)는 전자파일(USB 메모리 제출) 및 책으로 편철하여 12부 제출 전자파일은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할 것		

8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
- 소정양식은 강남구 홈페이지(<http://gangnam.go.kr>)에서 내려받아 작성
- 선정된 법인 또는, 학교는 기간 내에 협약체결, 미이행시 다음순위 법인 또는 학교)과 체결
- 선정된 법인 또는, 학교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,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.
- 위탁시설(사업)의 규모·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(<http://gangnam.go.kr>) 보육지원과 공지사항 참조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보육지원과(담당 김정민 ☎ 3423-5853)로 문의 바람

